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5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 11. 16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인·명을 명으로 용어통일, 구청장·구의 약칭 사용(안 제2조)
- 나.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관할 조정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의 회의 등 관련법 조항과 불일치한 사항 개정, 위원회 회의 비공개 조항 신설(안 제6조제2항, 같은 조 제5항 신설)
- 라.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시 전년도 재산등록,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·제9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9. 20 ~ 10. 10(20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인” 을 “1명” 으로, “5인” 을 “5명” 으로, “구청장” 을 “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3인” 을 “3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 을 “2명” 으로,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 를 “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 라 한다)로 하고,

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3인” 을 “3명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2인” 을 “2명” 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 를 “구” 로, “의회” 를 “구의회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” 를 “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법 제8조제11항” 을 “법 제8조제12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및” 을 “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” 을 “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산광역시 사하구” 를 “구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1” 을 “어느 하나” 로, “재적위원 3분의 2 이상” 을 “출석위원 3분의 2이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8조제6항” 을 “법 제8조제7항” 으로, “법 제8조제11항” 을 “법 제8조제12항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“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” 를 “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” 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<u>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. 2인의 위원은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 의회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.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. <p>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 의회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<u>의회</u>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1명 ----- 5명 ----- ----- -- <u>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1. 3명 ----- ----- ----- 2. 2명 --- <u>부산광역시 사하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1. ----- 3명 --- ----- ----- 2 ----- 2명 - ----- ----- ③ ----- 구 ----- ----- <u>구의회</u> ----- -----</p>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<u>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</u>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	<p>제3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1. <u>재산등록사항의 심사</u> 와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2. <u>법 제8조제11항</u>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.</p> <p>1. <u>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</u>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</u>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p>	<p>2. <u>법 제8조제12항</u> ----- -----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/p> <p>1. <u>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,----- ----- -----</p> <p>2. <u>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부산광역시 사하구</u>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<u>재적위원 3분의 2이상</u>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6조(위원회의 회의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어느 하나</u> ----- <u>출석위원 3분의 2이상</u>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4.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한 고발</p> <p>③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1. 법 제8조제7항 ----- ----- 법 제8조제12항 -- -----</p> <p>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7조의2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</u>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 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